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고성미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 / 제정 2021. 9. 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
- 나)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 다)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를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1조).
-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에서 제20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에서 제29조).
- 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에서 제35조).
- 아)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 자)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우리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장, 3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내 용
제1장(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와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도시 추진 산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물관리 사업, 적응대책 수립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확산)	-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의회 보고
제6장 (보칙)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표창 등

**(1)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7조)**

- 조례 목적, 기본원칙,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  
(법 제3조, 제4조, 제5조 근거)

**(2) 안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8조~제11조)**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을 규정함.(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근거)

**(3) 안 제3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2조~제20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2조 근거)

**(4) 안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제21조~제3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도시 추진, 녹색건축물/녹색교통 활성화친환경차 보급, 기후대응 적응대책 수립 등을 규정함(법 제24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근거)

**(5) 안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31조~제36조)**

-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을 규정함(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근거)

**(6) 안 제6장 보칙(안 제37조~제3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표창 등을 규정함(법 제79조 근거)

## 다. 검토의견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http://www.korea.kr))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조례 제정 현황(2022. 11월 기준)

- 서울시 및 9개 자치구(강남, 강북, 구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에서 조례 제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